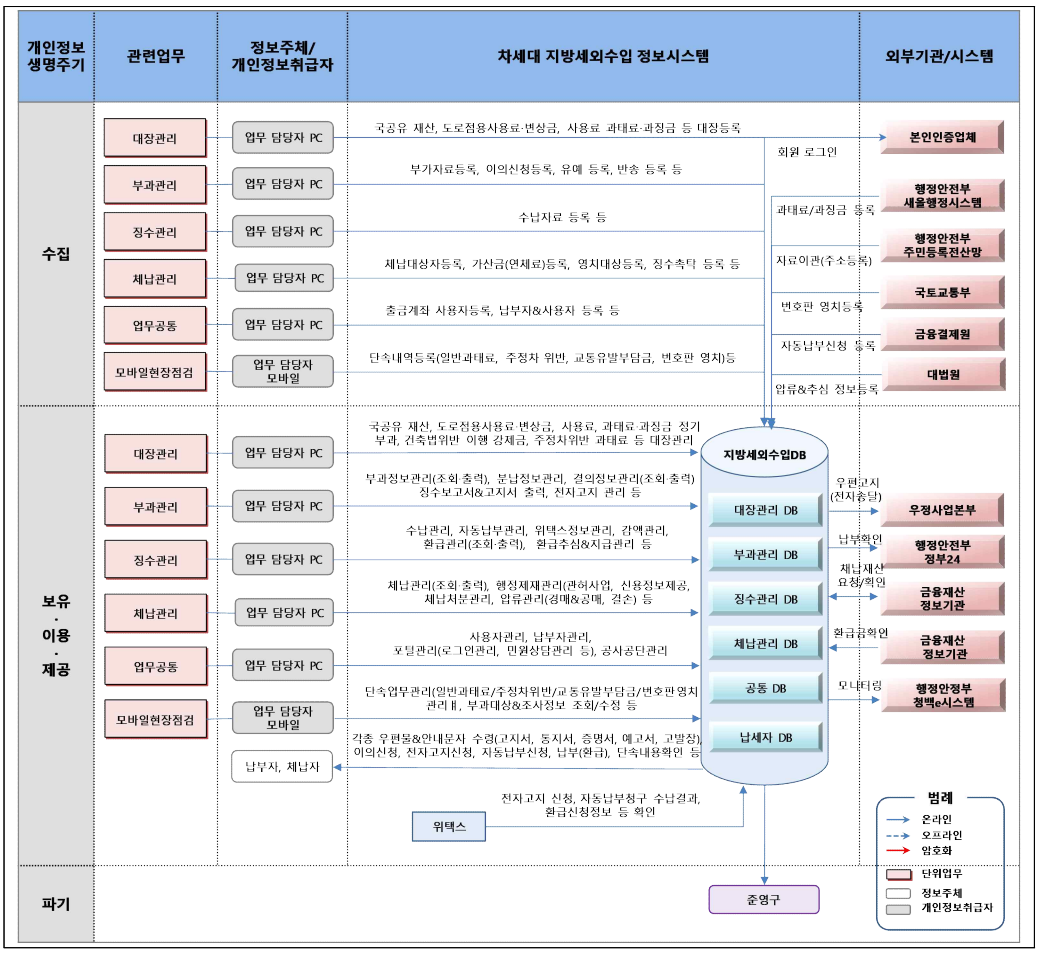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경기도 군포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케이씨에이 컨소시엄</td><td>평가 기간</td><td>2026.03.27 ~ 2026.04.30</td><td>평가 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
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
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
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</td><td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 colspan="2">2026. 01. ~ 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·징수·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
•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
• 신규 구축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02,650,562천원
(VAT 별도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
☐ 변경(고도화)
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
• 세외수입 관련 법·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
•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</td><td colspan="6">해당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개인정보파일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 수</td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세외수입 감액관리</td><td>55,625</td><td colspan="2">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</td><td>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</td><td>세외수입 감액관리</td></tr>
<tr><td>세외수입 결손관리</td><td>679</td><td colspan="2">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</td><td>금융결제원, 중계처리시스템, 여신금융협회,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시스템, 건설공제조합, 건설공제조합출자금압류시스템, 대법원, 법원경매정보시스템, PG사(VAN), 신용정보기관시스템,</td><td>세외수입 결손관리</td></tr>
</table>

				한국자산관리공사, 조세정리시스템, 국세청, 국세행정시스템(NTIS), 관세청,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(유니패스), 한국신용정보원, 신용정보시스템	
	세외수입 과오납관리	20,220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예금주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명)	금융결제원, 자동이체처리센터, 여신금융협회,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시스템, 행정안전부,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(청백e)	세외수입 과오납관리
	세외수입 부과관리	205,770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국토교통부, 부동산거래시스템/바른땅시스템, 우정사업본부, e-그린시스템	세외수입 부과관리
	세외수입 수납관리	205,770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금융결제원 인터넷전자납부시스템	세외수입 수납처리
	세외수입 압류관리	466,776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금융결제원, 중계처리시스템, 여신금융협회,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시스템, 건설공제조합, 건설공제조합출자금압류시스템, 대법원, 법원경매정보시스템, PG사(VAN), 신용정보기관시스템, 한국자산관리공사, 조세정리시스템, 국세청, 국세행정시스템(NTIS), 관세청,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(유니패스), 한국신용정보원, 신용정보시스템	세외수입 압류관리
	세외수입 체납관리	8,510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국토교통부, 부동산거래시스템	세외수입 체납관리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	1. 개인정보 처리 흐름 -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, 징수, 수납, 체납관리 등을 위해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				

		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 - 군포시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/징수/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
영향평가기준	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	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"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'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 단, 행정안전부 "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"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" 에서 제시한 "자치단체 점검내용"을 포함하여 평가함. 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의 8개 항목 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의 15개 항목 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
	주요 평가기준	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 보호법령"을 반영 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"을 반영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
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</td><td><u>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</u>
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
『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
『자동차관리법』 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
『국유재산법』 제32조(사용료), 제72조(변상금의 징수)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』 제22조(사용료), 제81조(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

<u>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</u>
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(준영구)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

<u>3. 영향평가 수행 시 “부분이행”, “미이행”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험요소 사항</u>
- 정보주체 권리보장 접수부서/담당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, 권리 요청이 적절한 부서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지연되어, 정보주체의 권리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등)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
-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어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,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이 훼손 및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인지하지 못해 열람·정정·삭제 등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함
- 침해대응 모의훈련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, 실제 침해 상황 발생 시 조직 구성원들이 절차와 역할을 숙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.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</td><td>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</td><td>•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안
- 정보주체 권리보장 접수 부서/담당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(1.4.1)
-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법적근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(3.1.9)
• 유출 등 대응 모의 훈련
-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모의훈련 계획 및 훈련 시행 (1.3.2)</td></tr>
<tr><td>위험요소에</td><td>• 정보주체 권리보장 접수 부서/담당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확인</td></tr>
</table>

	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	•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법적근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확인
평가결과		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7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으로 평가되었음. 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. 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 없으므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4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으로 평가되었음. 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7개 항목을 제외하고 20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.